

### 제 1조 용어의 정의

- ①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 ② 전시회라 함은 「2016 서울키덜트페어」를 말한다.
- ③ 주최자라 함은 (주)가족사랑전람(AllFair)를 말한다.

###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 ①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주일 내로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잔액 50%는 인보이스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하며 최대 2016년 7월 1일까지 납부한다.
- ②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 3조 전시부스 배정

- ①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규모와 전시품목,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신청순서,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를 배정한다.
- ② 부스배정은 주최자의 고유 권한이며, 전시자는 추후 부스 배정의 문제로 인해 주최자에게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4조 전시공간 사용

-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해야 한다.
- ②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방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 제 5조 납입조건

- ①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은 인보이스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하며 최대 2016년 7월 1일까지 납부한다.
- ②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6조 참가취소에 따른 위약금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자가 참가신청을 한 날짜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전시개시일 2개월 전~3개월 이내 취소 : 참가비(부스비 포함)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개시일 1개월 전~2개월 이내 취소 : 참가비(부스비 포함)의 7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개시일 1개월 이내 취소 : 참가비(부스비 포함)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①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시공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전시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반출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①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경비조치를 취한다.
- ② 전시자는 전시준비, 철거기간 및 전시기간동안에 부스 내의 시설, 설비, 비품, 전시품 등의 도난, 파손 방지를 위하여 자체관리자를 상주시켜 전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전시자는 전시부스 훼손 및 부스 내의 시설, 설비, 비품, 전시품의 도난, 파손 또는 기타 개인 상해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④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11조 방화규칙

- 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②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2조 소음규제

- ① 음향기기의 소음은 주변 전시자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통로를 인접한 부스경계선상에서 측정하여 70dB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주최자는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가 소음 규정을 위반했을 시 음량을 낮추게 하거나 스피커 사용 중단을 명할 수 있고, 3회 이상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전시자는 차기 전시회 참가 시 전시면적 및 위치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 13조 보충규정

- ①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자는 코엑스(COEX)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